

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

제정 2016. 9. 5.

개정 2017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스쿨, 학과 및 전공에 관한 신설, 통·폐합,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과 이에 따른 소속교수의 전공전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대학 학칙 제4조에 규정된 스쿨(학과, 전공)에 적용한다.

제4조(구조조정 원칙) 구조조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 달성
2. 대학 특성화방향 일치성 및 미래발전 가능성
3.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
4.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추진에 대한 대응
5. 정부의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능동적 대응
6.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

제5조(구조조정 기준) ①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.

1. 신입생 충원율
 2. 재학생 충원율
 3. 취업률
 4. 스쿨(학과, 전공) 운영상태 : 재학률, 입시경쟁력, 학생만족도(신입생, 재학생, 졸업생), 스쿨(학과, 전공) 미래전망(해당분야) 등
- ② 제①항의 제1호, 제2호, 제3호는 최근 5년의 자료를 활용하고, 산식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적용하며, 제4호의 재학률은 교원업적평가 산정기준을 적용한다.

제6조(스쿨(학과, 전공)의 폐지) ① 매년 4월 1일자 신입생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% 미만인 스쿨(학과, 전공)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스쿨(학과, 전공)을 폐지할 수 있다.

② 편제정원 대비 등록금 납부인원이 60% 미만인 스쿨(학과, 전공)은 다음연도에 스쿨(학과, 전공)을 폐지할 수 있다.

③ 신설 스쿨(학과, 전공)의 경우 스쿨(학과, 전공)의 완성연도 이후 제①항과 제②항을 적용한다.

④ 제①항과 제②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총장은 제5조의 구조조정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

단하여 스쿨(학과, 전공)의 정원조정 및 통폐합 할 수 있다.

제7조(폐지 절차) 제6조의 기준에 따른 스쿨(학과, 전공)의 폐지에 대해서는 기획실 혹은 교학처에서 발의하여 구조개혁 대상스쿨(학과, 전공)과의 협의,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하며, 폐지 및 통폐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지(모집중지)

가. 폐지된 스쿨(학과, 전공)은 다음 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.

나. 폐지된 스쿨(학과, 전공)은 「학칙」의 부칙 「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」에 따라 스쿨(학과, 전공)을 유지·종료한다.

2. 통폐합

가. 스쿨(학과, 전공)의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스쿨(학과, 전공)이 통합할 수 있다.

단, 폐지기준에 따라 통폐합되는 경우 해당스쿨(학과, 전공)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.

나.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, 취업률 등 제5조(구조조정기준)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쿨(학과, 전공)을 통폐합할 수 있다.

제8조(학생의 신분유지) ① 폐지스쿨(학과, 전공) 소속의 학생은 입학 시의 스쿨(학과, 전공) 소속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기간은 「학칙」의 부칙 「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」에 따른다
② 통폐합된 스쿨(학과, 전공) 소속의 학생은 통폐합된 차년도부터 통폐합된 스쿨(학과, 전공) 소속이 된다.

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소속 학생이 원하는 경우 소속스쿨(학과, 전공)의 변경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스쿨(학과, 전공)의 폐지로 인한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① 폐지스쿨(학과, 전공)에 따른 소속 교원의 신분은 다음과 같다.

1. 전공을 고려하여 유사스쿨(학과, 전공)의 동의를 거쳐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2. 전공전환 등을 통하여 타 스쿨(학과, 전공)로 배치할 수 있다.

3. 그 밖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퇴직 할 수 있다.

제10조(폐지의 경과 조치) ① 폐지기준 대상스쿨(학과, 전공)이라 하더라도 대학발전 차원에서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.

제11조(전공전환 대상) ① 전공전환 대상 교원은 폐지 대상스쿨(학과, 전공)의 전임교원(교수, 부교수, 조교수)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은 교원수급계획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전환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전공전환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전공전환을 제한한다.

1. 퇴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자

2. 1회 이상 전공전환 교육을 받은 자

3. 그 밖에 전공전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12조(전공전환 신청) ① 전공전환 희망교원은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전공전환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소속 스쿨원장(학과장)을 경유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하며, 교학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전공전환 예정일은 매학기말로 한다.

제13조(전공전환 기간) 전공전환 기간은 기존의 스쿨(학과, 전공)의 유지기간 내로 한다.

제14조(전공전환 심의) 전공전환에 관한 심의는 교무위원회에서 실시하며,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제15조(전공전환 교원의 의무) ① 전공전환 희망교원은 전공전환 기간 중 매학기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교학처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
② 전공전환 희망교원은 전공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전공전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체 없이 교학처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전공전환 기간 중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전공전환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공전환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/ 별지 제1호 서식)

전공전환 신청서

성명 (한글) (한자)	주민등록번호	
소속	직급	
주소		
전공전환기간	대상기관	
<p>1. 전공전환의 목적 및 필요성 2. 전공전환 방법 3. 전공전환 내용 4. 전환 전공의 비전 5. 전공전환 교육 후 스쿨(학과, 전공)에 대한 기여방안 및 교육계획(강의계획서, 교과과정 등) 6. 기타</p> <p>* 별지에 상세하게 작성하시오.</p>		

본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전공전환을 신청합니다.

20

신청인 : (인)

소속 부서장 : (인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